

대 산 지 구 농 업 용 수 수 질 개 선 사 업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0. 11



농림축산식품부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5년간 대산저수지 수질이 호소 생활환경기준 IV등급을 초과하는 실정으로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호소 생활환경기준” IV등급(농업용수 수질기준)이내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대산저수지의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표 1.1-1> 대산저수지 최근 5년간 수질분석 결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 평균	농업용수 기준(IV)	비고
TOC(mg/L)	8.8	6.8	6.3	7.1	6.4	7.1	6.0	IV등급 기준초과
T-P(mg/L)	0.081	0.037	0.036	0.069	0.037	0.053	0.1	
T-N(mg/L)	0.992	0.794	0.887	0.920	1.052	0.930	1.0	
COD(mg/L)	17.1	10.6	12.3	14.5	14.5	13.8	8.0	IV등급 기준초과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1.2 환경영향평가법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의 개발기본계획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파. 특정지역의 개발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2.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농업용저수지에 인공습지, 식생수로 양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별표4]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10,00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 이에,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 3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함.

<표 1.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계획지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적용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 계획관리지역 27,500제곱미터 · 평가대상 해당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별표4] 제1호 나목

<표 1.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이하생략”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1.3 추진경위 및 계획

- 20. 04 : 대산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기본조사
- 20.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20.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 20. 12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1.4 계획의 내용

1.4.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대산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송피리 일원
- 계획면적 : 27,500m²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사업면적 6만m²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생략
- 사업 시행(예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간(예정) : 착공후 3년 이내

<표 1.4-1> 대산저수지 시설현황

유역면적	1,880.0ha	만수면적	28.9ha
수해면적	288.9ha	유효저수량	1,271.0천m ³
설치년도	1980년	관리주체	강화지사

1.4.2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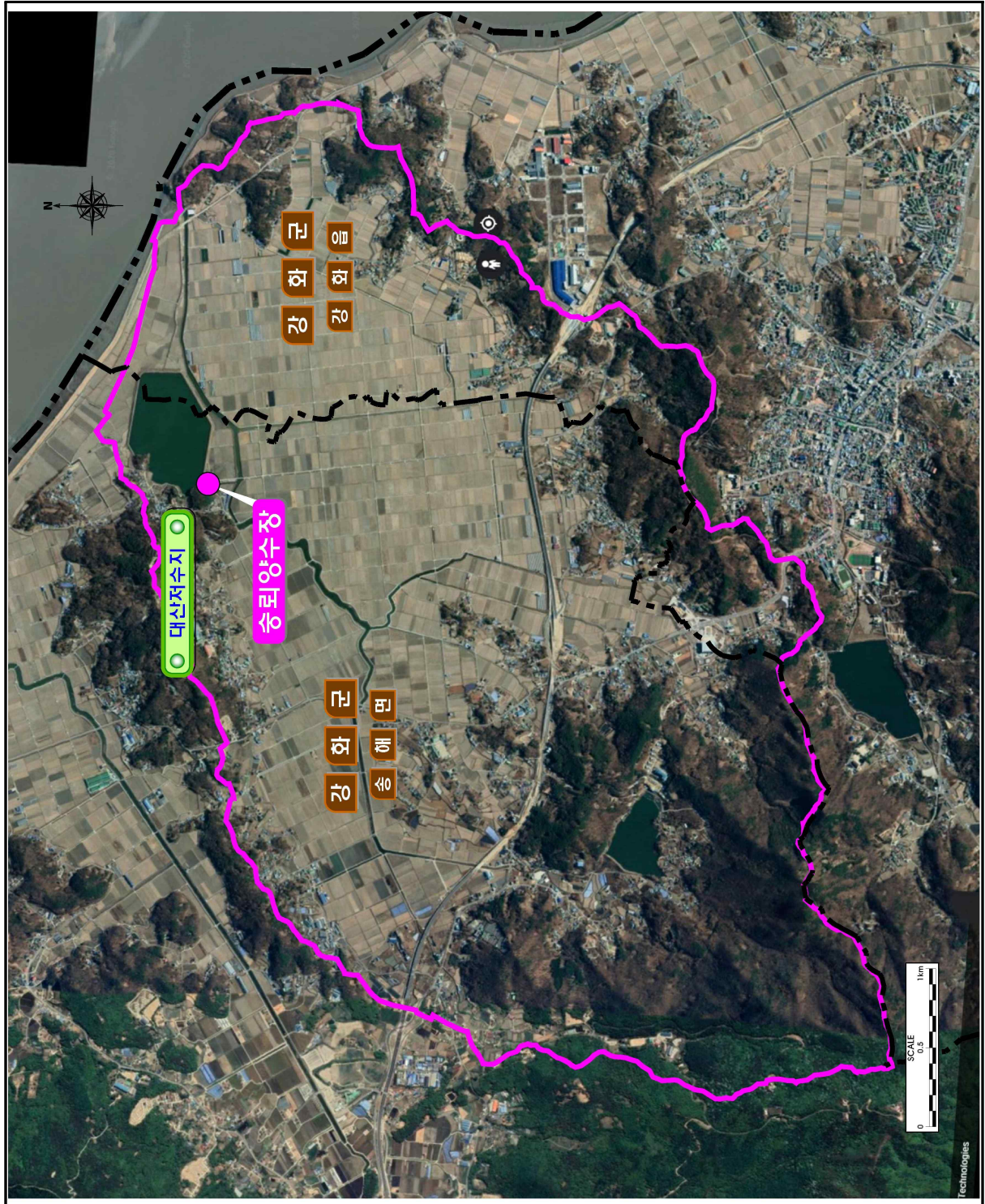
-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을 통한 호유입부 및 호내 수질개선대책 마련

<표 1.4-2>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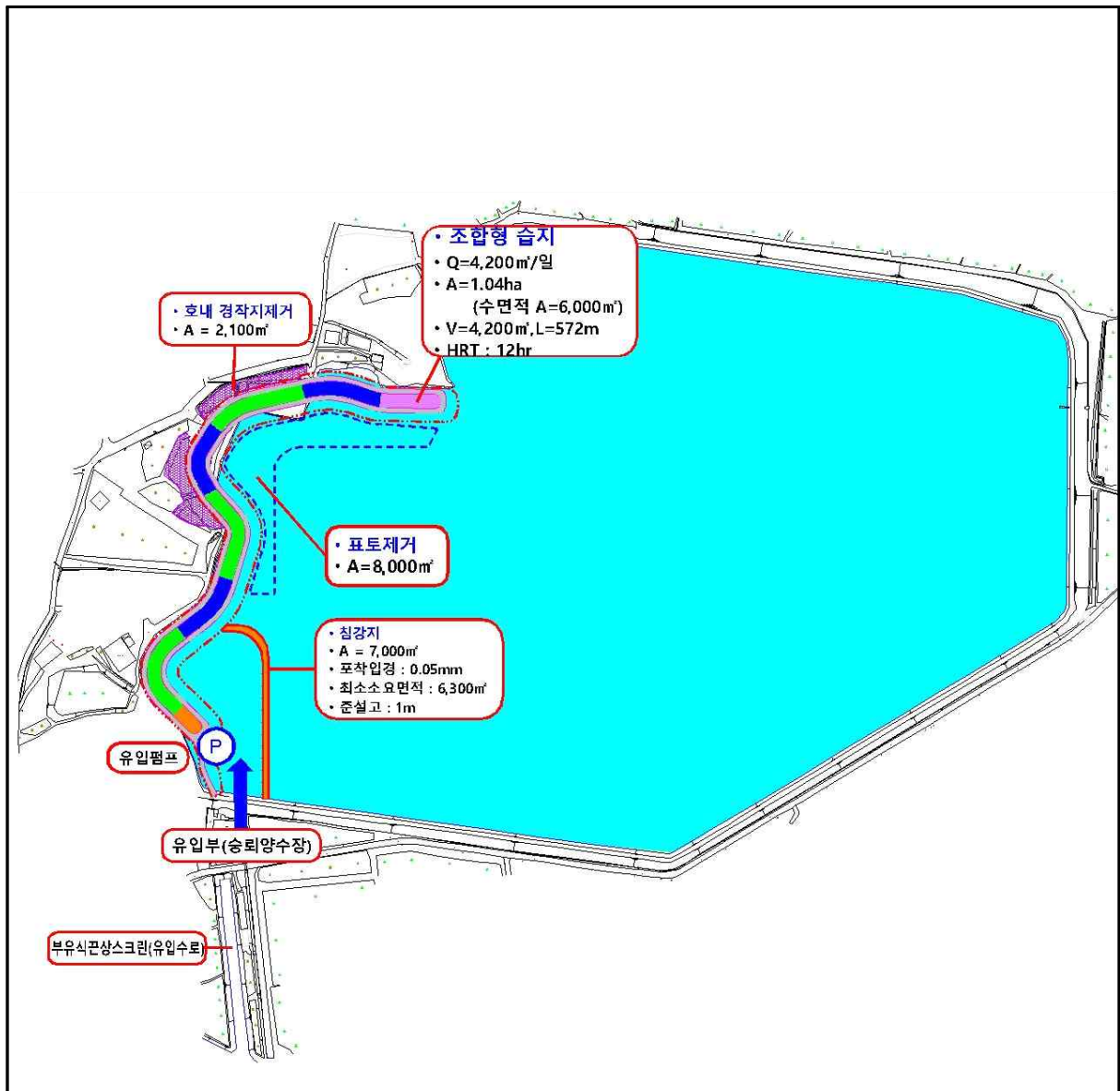
구분	개소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호유입부 및 호내 대책	4	27,500	100.0	
인공습지	1	10,400	37.8	-
침강지	1	7,000	25.5	-
표토제거	1	8,000	29.1	-
호내 경작지제거	1	2,100	7.6	-

1.5 계획의 기대효과

-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민건강 보호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질 및 생태환경 유지와 종다양성 확보
- 환경친화적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친수환경 구축
-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홍보 및 교육공간 제공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2) 계획평면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2.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계획지구는 27,500m² 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의 규모)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없이 평가항목·범위·방법, 대안들을 결정하였음.

<표 2.1-1> 토지이용 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27,500	100.0	
인공습지	10,400	37.8	-
침강지	7,000	25.5	-
표토제거	8,000	29.1	
호내 경작지제거	2,100	7.6	

<표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생략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u>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 <개정 2016. 5. 29.> “이하 생략”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u>6만제곱미터</u> 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 11. 29.]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제 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 참고 문헌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

<표 2.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 지역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 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본 사업관련 계획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등 대안별 비교·분석을 위한 광역 범위 설정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시 계획지구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산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저수지 및 하류 수계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수리·수문 변화가 예상 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계획 검토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 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규모의 적정성 예상지역	계획지구 및 해당지자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폐자원 발생 및 지자체 처리 계획 검토 ○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변화가 예상되 는 지역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계획지구 및 해당지자체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 되는 지역, 수해지역, 입지제한사항 검토 ○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물 및 주거환경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해당지자체

2.2.2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선정

○ 본 계획의 평가 항목의 설정은 다음과 같음

- 참고 문헌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

<표 2.2-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구분			선정구분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 검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자연생태환경)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계획시행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 변화 발생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			○계획시행시 지형·지질 변화,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발생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의 현황 파악 ○공사시 및 운영시 저수지 및 하류수계 수질변화가 예상 ○수질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 예측
		해양환경			●	○계획대상 지역은 내륙지역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현황파악
		대기질	●			○공사시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			●	○계획시행에 따른 악취발생 요인 없음
		토양		●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우려
		소음·진동	●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 해당지자체별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시행 전·후에 의한 토지이용 형태변화
		인구/주거/ 산업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주거, 산업에 대한 변화 없음

나. 평가항목의 조사·예측·평가 방법

- 본 계획의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구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표 2.2-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조사 계획	영향예측·평가 계획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방법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 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및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자연생태 환경)	① 조사내용 : 자연(식생현황 및 동·식물 서식 환경 등) 및 자연환경 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유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 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평가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 유역 산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 사업계획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영향 예측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예측·평가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현황 및 경관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및 보전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여부 예측 ·평가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 지표수(하천, 저수지) 수질현황, 오염원현황, 수문분석 및 유역의 특성 ② 조사범위 : 저수지 및 상·하류 하천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④ 조사지점 : 저수지 상·하류 및 주변수계 - 유입하천 1지점, 배수로 1지점, 유출하천 1지점, 호소 3지점(수온, pH, EC, DO, BOD, TOC등 20항목)	○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예측식을 이용하여 정량적 예측·평가 ○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해 저수지 및 하류수계 수질변화 검토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조사 계획	영향예측·평가 계획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① 조사방법 :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주변 기상대 자료 분석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주변지역의 기상현황파악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질 및 오염원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④ 조사지점 : 계획지구 주변 - 2지점(PM10, NO ₂ , SO ₂ , CO 등 8개 항목)	○ 현장실측을 통한 대기질 분석 ○ 대기오염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내 편입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④ 조사지점 : 계획지구 주변 - 1지점(Cd, Cu, AS, Hg, Pb 등 21개 항목)	○ 토양오염도 조사 및 계획시행시 토양 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④ 조사지점 : 계획지구 주변 정온시설 - 2지점(소음, 진동)	○ 현장실측을 통한 소음·진동 분석 ○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예측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해당지자체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 계획지구 및 주변 해당지자체별 환경 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주변 오염원 처리계획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 해당 지자체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 발생하는 폐기물량(분뇨, 폐유 등)을 원단위를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예측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를 포함하는 해당 지자체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1회) 병행	○ 사업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2.3 대안검토

- 본 계획은 대산지구 농업용수에 대한 인공습지, 침강지 등의 호수 내 수질개선을 연계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대안 검토시 계획비교(사업 시행시/미시행시), 수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장·단점을 비교하여 대안을 선정함.

2.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대안의 선정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문헌을 기초하여 계획의 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등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은 6개의 항목 중 계획비교(행정계획수립 및 미수립), 수단·방법 등 2개의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 검토함.

- 참고문헌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표 2.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의 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으로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가. 계획비교

- 본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대안 1, No 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대안 2. Action)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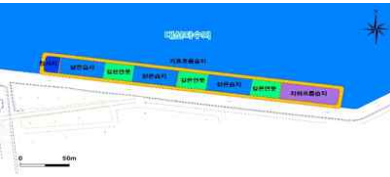
<표 2.3-2> 계획의 비교

구분	대안1(No action)	대안2(Action)
토지이용 측면	○ 토지이용 변화 없음	○ 일부 저수지(유지) 유역을 수질정화 습지 및 침강지로 변경
수자원의 이용측면	○ 원수의 수질악화로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 곤란 ○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저하	○ 원수의 수질개선 및 보전으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 ○ 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조성
생태계훼손 가능성	○ 악화된 수질로 수생태계 단순화 및 하류 하천 수질 환경 저해	○ 공사시 일시적 생태계 교란은 있으나 수질개선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훼손 없음	○ 정화시설(습지) 조성으로 저수지 일부 지형 교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쾌적한 생활환경유지에 미치는 영향	○ 수질악화, 녹조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 악화	○ 수질개선 및 오염현상 완화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인공습지 조성을 통한 경관 향상 및 경관 요소 다양화에 기여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비점오염원 유입 및 내부오염부하로 환경기준 초과	○ 유입수 및 호내 수질정화를 통한 환경 기준 달성 및 유지
선정(안)	-	◎
검토결과	○ 본 계획은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 영향이 검토됨. ○ 본 계획은 개발계획 보다는 농촌지역 수환경을 보호하는 보전계획의 성격이 강하며, 대안별 비교분석결과 사업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수단·방법

- 본 계획에 대한 계획시설 별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함

<표 2.3-3> 수단·방법

평가영역	대안	
	1안	2안
공법	저수지 부지내 설치(유선형) 	저수지 호내 설치(정형) 
장점	○ 육상 부지내 설치로 시공성 확보 ○ 호내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우수를 양수하여 저감효율 최대화 ○ 설치연장을 최대화 하여 호내 전체적인 물순환 가능	○ 유입수로 인근에 위치하여 유입 원수, 호내우수 선택취수 가능 ○ 승퇴양수장 양주기능 분담가능
단점	○ 펌프설치위치 반경 110m 인근에 주거지가 위치하여 일부 소음 민원 발생 예상	○ 호내 설치되어 내용적(유효용량) 감소 ○ 호내 설치로 진입로 개설 등 시공성, 경제성 저하 ○ 호내 수면과 접하여 설치되어 공사중, 운영초기 제방안정화 필요
선정	◎	

제3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

3.1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신망 및 제 70조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3.1.2 의견수렴

- 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3.2.3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 주민은 공람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에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기간 중 실시(설명회 장소는 추후에 협의)
 -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 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의 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표 3.1-1> 공청회 개최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

3.2 의견수렴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표 3.2-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19조

3.3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표 3.2-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1. 27.>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승인기관의 장: 5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5부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12조 제2항